
2011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계획

2011. 1.

보 건 복 지 부
국 립 암 센 터
암정복추진기획단

목 차

I . 사업개요	1
II . 2011년도 추진계획	9
① 추진방향	10
② 연구비 배분계획	11
③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12
[붙임1] '암 진단·치료 중개융합연구(협동)' 제안요청서	14
[붙임2] '암 진단·치료 중개융합연구(다기관임상)' 제안요청서	15
[붙임3] '암 진단·치료 중개융합연구(지역암센터)' 제안요청서	19
[붙임4] '암 예방·관리 연구' 제안요청서	20
[붙임5] '암정복을 위한 암연구 기획과제 도출' 제안요청서	21
④ 연구기간 및 사업추진일정	22
⑤ 사업추진·관리체계	23
III . 신청요건 및 방법	24
① 신청요건	25
② 신청방법	29
IV . 평가 및 관리	31
① 평가방법	32
② 연구사업의 운영 및 관리	39
[별첨1]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해당 기준표	43
[별첨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44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우리나라 암의 원인 및 기전을 규명하고, 보다 효과적인 암 예방·진단·치료법을 연구 개발하여 국민의 보건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제2기 암정복10개년계획(2006-2015)에 따라 암정복을 위해 중점 연구분야를 대상으로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 연구사업 육성
- 기반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환자에 적용하는 이행성 연구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암 예방·진단·치료 수준의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

2 추진전략

- 제2기 암정복10개년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부문 세부 실천계획 수립
- 21세기 암정복을 위해 시대에 부응하는 과제 기획 및 추진
- 우리나라 암의 원인 및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과제 기획 및 발굴
- 국가 암 관리 사업 등 국가 정책에 따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 과제 연구 및 개발
- 국가암관리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결정 지원
- 이행성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방안 강구

3 사업근거

- 암관리법 제7조 (법률 제9932호)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6호)
- 보건복지부 암정복2015 - 제2기 암정복10개년계획 (2006)

4 추진경위

- 1996** ‘암정복10개년계획’(1996-2005) 수립
 - 암정복추진기획단 설치 및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시행
- 2000**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사무국이 국립보건원에서 국립암센터로 이관
- 2002** ‘암정복을 위한 국가 암연구 활성화 계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의결
 - 국가 암연구 기획관리체계 정비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 기반연구와 임상연구 결과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이행성 연구를 중점 전략분야로 집중 지원 육성
 - ‘21C 프런티어 사업’ 등 타부처 암관련 연구사업 : 기초연구 강화
- 2003** ‘암관리법’ 제정·공포
 - 국가암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암관리종합계획 등 중요사항 심의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활성화 : 새로운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
- 2006** ‘제2기 암정복10개년계획’(2006-2015) 수립
- 2010**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도출’ 기획과제 추진
 - 지원 프로그램 개편

5 연도별 투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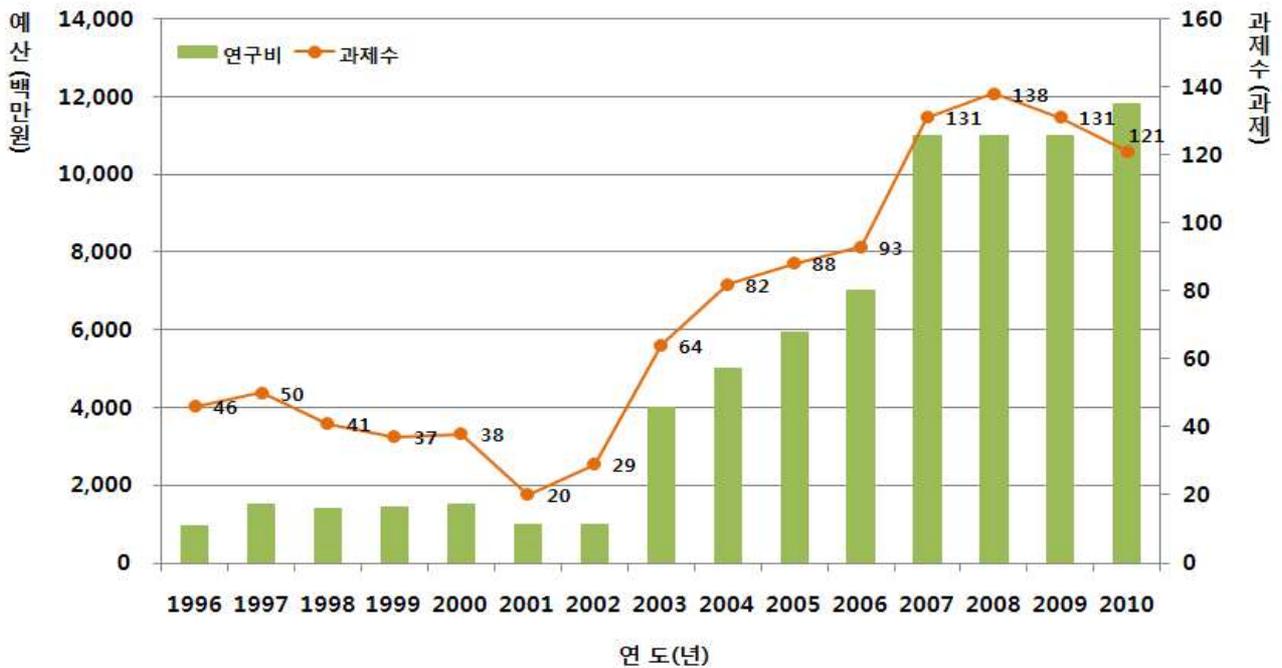
○ 투자실적 : 총 1,109과제, 75,529백만원 (1996-2010)

(단위: 백만원, 과제수 / 2010.12. 기준)

구분	합계	1996-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예산	75,529	7,797	1,000	4,000	5,000	5,922	7,000	11,000	11,000	11,000	11,810
과제수	1,109	232	29	64	82	88	93	131	138	131	121

※ 2010년도 121과제 (신규: 47과제, 계속: 74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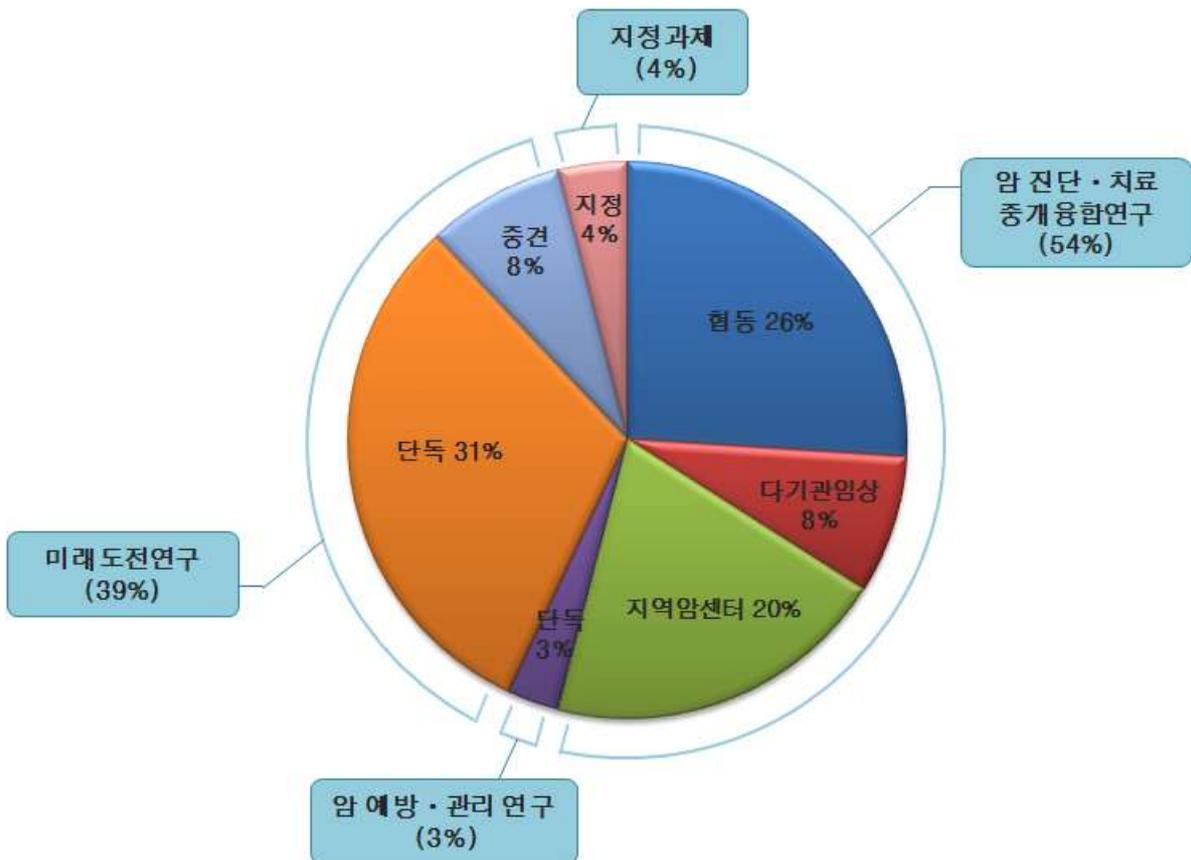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도별 예산 및 과제수 현황



6 2010년도 연구비 지원현황

(단위: 개, %)

프로그램		연구비	과제수	비율
암 진단·치료 중개융합연구	협동	2,980	18	26
	다기관임상	965	9	8
	지역암센터	2,370	9	20
암 예방·관리연구	단독	310	6	3
	협동	0	0	0
미래도전연구	단독	3,557	67	31
	중견	870	6	8
지정과제		500	6	4
계		11,552	121	100



7 주요 연구성과

정부정책기여

내 용	연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피지놈 마커를 이용한 암 진단제 개발연구의 타당성 조사 및 산업화 전략 · 질환별 후성 유전체 분석 및 마커 탐색에 대한 후속사업 기획 추진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김영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도출 · 보건복지부 암 관련 연구개발 사업 추진관련 제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현병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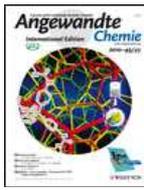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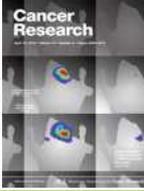
진료지침개발

내 용	연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여성암(자궁경부암 및 유방암) 근거중심의 진료지침 개발과 보급과정의 표준화 모형 구축 · 부인암 진료권고안 VERSION 2.0 	대한의학회 안형식

논문

구 분	논 문 명	IF	연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igma negatively regulates p53 through MDM2 and promotes tumor cell survival in mice -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2010.12) 	15.38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초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patitis B virus infection and risk of non-Hodgkin lymphoma in South Korea : a cohort study - Lancet Oncology (2010.9) 	14.470	연세대학교 지선하

I. 사업개요

구분	논문명	IF	연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e-Step Modification of Superhydrophobic Surfaces by a Mussel-Inspired Polymer Coating - Angewandte Chemie (2010.12) 	11.829	한국과학기술원 이해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Caenorhabditis elegans Werner syndrome protein functions upstream of ATR and ATM in response to DNA replication inhibition and double-strand DNA breaks - PLoS genetics (2010.1) 	9.532	연세대학교 구현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ycoprotein 90K, downregulated in advanced colorectal cancer tissues, interacts with CD9/CD82 and suppresses the Wnt/beta-catenin signal via ISGylation of beta-catenin - Gut (2010.7) 	9.357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정익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ail1 is stabilized by O-GlcNAc modification in hyperglycaemic condition - Embo journal (2010.11) 	8.993	연세대학교 육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entification of a Cholangiocarcinoma-Like Gene Expression Trait in Hepatocellular Carcinoma - Cancer Research (2010.4) 	7.543	서울대학교병원 김윤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topic Expression of X-Linked Lymphocyte-Regulated Protein pM1 Renders Tumor Cells Resistant to Antitumor Immunity - Cancer Research (2010.4) 	7.543	고려대학교 김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etically Engineered Salmonella typhimurium as an Imageable Therapeutic Probe for Cancer - Cancer Research (2010.1) 	7.543	전남대학교 민정준

※ 기준 : 연구책임자가 교신 또는 제1저자이며, IF 7.5 이상인 논문

특 허

구 분	특 허 명	연구책임자
국외등록	IL-32 monoclonal antibodies and uses thereof	건국대학교 윤도영
국내등록	PPAR-δ에 결합하는 RNA 앵타머 및 이의 용도	단국대학교 정선주
	항-테나신 C 펩타이드 및 그의 용도	
	NF-κB의 p50에 결합하는 펩타이드 앵타머	
	산화철 나노입자가 봉입된 수용성 키토산-소수성 리놀레산 복합체 자기-조립 나노입자,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간질환 진단용 조영제	전북대학교병원 임석태
	간질환 진단용 조영제 및 이의 제조방법	
	금 할로우 나노입자 및 광학 이미징 기술을 이용한 암 세포 판별법	한양대학교 주재범
국외출원	E2EPF UCP-VHL 상호작용 및 그 용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초록
국외출원 국내출원	세포핵에서 세포질로의 GSK3의 이동을 억제하는 화합물을 함유하는 세포핵에서 세포질로의 GSK3 이동 관련 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용 약학적 조성물 - 관련특허 PCT 출원 3건, 국내출원 3건	연세대학교 육종인

II

2011년도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제2기 암정복10개년계획(2006-2015)에 따라 구축된 기반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성과지향의 연구사업 추진
- 암 진단·치료·예방 기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인 연구 지원 및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연계 강화를 위한 중개융합 협동연구 중점 지원
- 단독연구보다는 협동연구 지향
- 암 연구의 방향성 제시 및 현안 과제 도출을 위한 기획과제 추진
- 효율적인 국가 암 연구수행 및 암 연구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암정복 포럼』 운영

암 진단·치료 중개융합연구

암 기반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구자와 임상의의 공동연구 및 다학제적인 연구 기법을 통해 암 예방·진단·치료기술의 상용화와 임상적용을 위한 응용연구과제

암 예방·관리연구

국가 암 예방·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한 연구결과 도출을 통해 암 관련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과제

미래도전연구

연구자 개인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암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수 있는 유망연구 지원

지정과제

효율적인 국가 암 관리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지원

기획과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 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기획과제

기타(운영비 등)

운영비, 연구사업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2 연구비 배분계획

- 2011년도 연구비 : 14,343백만원
 - 2010년 대비 정부출연금 18.6%(2,200백만원) 증가

2011년 연구비 배분(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0년도 배정계획				2011년도 배정(안)				
	합계		신규	계속	합계		신규	계속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12,205	100.0	4,983	7,222	14,343	100.0	4,852	9,491	
암 진단·치료 중개융합연구	협동	3,460	28.4	1,400	2,060	3,740	26.1	1,200	2,540
	다기관임상	965	7.9	400	565	1,338	9.3	400	938
	지역암센터	2,430	19.9	300	2,130	2,670	18.6	300	2,370
암 예방·관리 연구	단독	363	3.0	283	80	470	3.3	240	230
	협동	200	1.6	200	0	200	1.4	200	0
미래도전연구	단독	3,117	25.5	1,000	2,117	3,245	22.6	852	2,393
	중견	570	4.7	300	270	1,170	8.2	300	870
지정과제	600	4.9	600	0	550	3.8	400	150	
기획과제 ^{주)}	-	-	-	-	560	3.9	560	-	
기타(운영비 등)	500	4.1	500	-	400	2.8	400	-	

주) 2011년도 상반기에 사전 기획과제(20백만원 3과제)를 수행하고, 하반기에 500백만원 규모로 본 과제 추진예정

○ 신규과제

프로그램별 연구비 배분은 위에서 정한 기준으로 하되, 과제접수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암정복추진기획단 회의에서 최종 조정

○ 계속과제

평가결과 지원 '조기중단' 또는 '중단' 등으로 미배정 연구비가 발생할 경우 신규과제 지원

3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구 분	암 진단·치료 중개융합연구		
내 용	암 기반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구자와 임상과의 공동연구 및 다학제적인 연구기법을 통해 암 예방·진단·치료기술의 실용화와 임상적용을 위한 응용연구과제		
과제구분	협동	다기관 임상	지역암센터
지원규모	2억원 이내/년	2억원 이내/년	3억원 이내/년
기 간	3년 이내	5년 이내(2+3)	5년 이내(2+3)
과제구성	2개 이상의 세부과제	3개 이상 기관 참여	4개 이내의 세부과제
과제제안서(RFP)	붙임1	붙임2	붙임3

구 분	암 예방·관리연구	
내 용	국가 암 예방·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한 연구결과 도출을 통해 암 관련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과제	
과제구분	단독	협동
지원규모	0.6억원 이내/년	2억원 이내/년
기 간	3년 이내	3년 이내
과제구성	개별연구자	2개 이상의 세부과제
과제제안서(RFP)	붙임4	

II. 2011년도 추진계획

구 분	미래도전연구	
내 용	연구자 개개인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암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수 있는 유망 연구과제	
과제구분	단독	중견
지원규모	0.6억원 이내/년	1.5억원 이내/년
기 간	3년 이내	3년 이내
과제구성	개별연구자	개별연구자
PI 신청자격	-	최근 3년간('08년 이후) 교신 저자로 발표한 SCI 논문 IF의 합이 30점 이상인 연구자
구 분	지정과제	
내 용	효율적인 국가 암 관리 정책 수립 및 시행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	
지원규모	과제별 차등지원	
기 간	1년 이내	
과제제안서 (RFP)	-	
구 분	기획과제	
내 용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 연구 과제 도출을 위한 기획과제	
지원규모	0.2억원 이내	
기 간	3개월 이내	
과제제안서 (RFP)	붙임5	

붙임

1

‘암 진단·치료 중개융합연구 (협동)’ 제안요청서

과제명	-
지원규모 및 기간	연간 2억원 이내, 3년 이내
최종목표	암 기반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구자와 임상과의 공동연구 및 다학제적인 연구기법을 통해 암의 예방, 검진, 진단, 치료, 예후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용적인 암 극복 기술의 개발을 지원함
주요 연구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연구기법과 문제해결형 접근을 통하여 암 진단·치료·예방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층연구 - 동 프로그램은 이미 성과가 입증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중개융합연구를 통해 전임상 및 임상으로 연결 가능한 연구를 지원함
지원대상	주관연구기관은 산·학·연 모두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구성 시 기초의과학자(Ph.D)와 임상의과학자(MD)의 연계 (세부과제 책임자로 참여)가 필수 조건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준수 - 연구결과는 연차별로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여,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음

붙임
2

‘암 진단·치료 중개융합연구 (다기관 임상)’ 제안요청서

과제명	-
지원규모 및 기간	연간 2억원 이내, 5년 이내 (2년+3년) (단계별 기간 및 연구비는 연구과제 진척에 따라 조정함)
최종목표	다기관 공동 임상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 암의 진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암 진료의 질적 향상 및 진료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임상연구과제의 수행을 지원함
주요 연구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암 진료를 위한 근거 확립에 필요한 임상연구 - 새로운 암 예방, 진단 및 치료법의 검증을 위한 임상연구 · 국내 개발 암 치료제 및 치료기술의 활용을 위한 임상연구 권장
지원대상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프로그램의 수행에는 3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여야 함 · 과제계획서 제출 시 참여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미 수행 중인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다기관 임상’ 과제 및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성인고형암치료 임상연구센터’과제와의 인적구성 혹은 연구 내용면에서 중복되지 않아야 함 (세부내용은 뒷면 참조) - 연구수행을 위한 임상시험정보시스템의 사용은 국립암센터의 웹기반 임상시험관리시스템(eVelos System) 사용을 권장함 · 문의 : 국립암센터 임상시험센터 eVelos System 담당자 ☎ 031-920-0432 - 연구결과는 단계별로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여,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과제로 평가될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음

기 수행중인 다기관 임상 연구과제와의 중복에 관한 안내

인적구성

- 참여연구자 구성 시 기 수행중인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다기관 임상), 보건 의료기술진흥사업(성인고형암치료 임상연구센터) 과제와의 인적구성(총괄 및 세부연구책임자) 및 연구내용 중복을 최대한 피할 것을 권고하며, 중복성이 있는 경우 선정평가 시 반영될 것임
- 관련연구자의 기 수행과제 참여여부는 연구책임자가 관련연구자에게 직접 확인하여 구성토록 함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다기관 임상 프로그램 임상연구계획>

구분	임상연구계획
소아암 (백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최적의 치료법 정립을 위한 다기관 임상연구 - 새로 진단된 고위험군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다기관 임상 연구(강화된 MTX 중간유지요법을 이용한 항암치료의 유효성 평가) - 최고위험군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최적의 치료법 확립을 위한 다기관 임상연구(관해유도 후 3차례의 연속적인 공고요법에 이은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의 유효성) - 재발된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최적의 관해치료 정립에 대한 연구
소아암 (뇌종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아뇌종양의 표준 치료 지침의 개발을 위한 다기관 임상연구 - Multicenter clinical trial for pediatric germ cell tumors : The effectiveness of pre-irradiation adjuvant chemotherapy and low-dose radiation therapy - Prospective Study of Reduced Craniospinal Radiotherapy plus Conformal Tumor Bed Boost Followed by Adjuvant Chemotherapy Regimen (CPM, CDDP, VCR) in Children with Newly Diagnosed Average-Risk Medulloblastoma - Multicenter clinical trial for pediatric intracranial glioma: The effectiveness of combined adjuvant chemotherapy and radiation therapy - Reduced-dose Craniospinal Radiotherapy Followed by High-dose Chemotherapy and Autologous Stem Cell Rescue in Children with Newly Diagnosed - High-dose Chemotherapy and Autologous Stem Cell Rescue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with Newly Diagnosed High-risk Brain Tumor To Avoid or Reduce Craniospinal Radiation - High-dose Chemotherapy and Autologous Stem Cell Rescue in Children with Recurrent Brain Tumor or Non-germinomatous Germ Cell Tumor with Inadequate Response to Conventional Treatment
간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성 간암의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대한간암연구회 공동임상연구 - 간동맥내 고용량 화학주입요법과 아드리마이신/리피오돌 병합요법간의 효능비교(전향적 다기관 공동연구)
자궁경부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보조적 방사선-항암화학요법에 관한 국제 다기관 임상 연구 - 중등도 위험인자를 갖는 자궁경부암 환자를 방사선 단독요법과 항암 방사선 복합요법의 비교 임상
혈액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매티닙 투여 후 완전유전자 반응을 보인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중단의 국제 표준 지침 마련을 위한 다기관 임상시험

II. 2011년도 추진계획

구분	임상연구계획
고형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형암의 새로운 방사선치료법 적용을 위한 다기관공동임상연구 - 유방절제술 후 방사선치료에서 내유림프절 조사의 효과에 대한 3상 연구 - 큰 전이성 뇌종양에서 전뇌방사선후 추가 방사선수술 의 2 상 임상연구 - 유방암, 전립선암의 골전이에서 고선량 방사선치료의 유용성에 대한 제3상 무작위배정 임상연구 - 비소세포 폐암환자에서 gefitinib 또는 erlotinib 투여시 질병진행이 없는 환자들에서 예방적 전뇌방사선조사의 효과에 대한 제2상 임상연구
위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암의 로봇 수술의 효용성 평가를 위한 다기관 공동연구 - 위암의 로봇수술 및 복강경 수술간의 장기 성적의 비교에 관한 다기관 전향적 무작위 연구 - 로봇 위암 수술의 비용 효과 분석 - 복강경 수술과의 전향적 비교 - 로봇 수술의 학습곡선 - 로봇 수술 후 급성 염증 반응 - 복강경 수술과의 전향적 비교 - 로봇 수술 후 삶의질 평가 분석 - 복강경 수술과의 전향적 비교
난소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향적 다기관 난소암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한 한국형 난소암 예방과 국가적 관리 방안 개발

〈성인고형암치료 임상연구센터 과제 임상연구계획〉

구분	임상연구계획
위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절제에 의한 치유가 불가능한 진행성 위암에 대해 위절제술 후 항암화학요법과 단독 항암화학요법 간의 비교를 위한 다국가, 다기관, 무작위배정 제3상 임상시험 2. 5-FU에 저항성을 보이는 진행성 혹은 재발성 위암에서 Nimotuzumab + Irinotecan 병용요법과 Irinotecan 단독요법의 비교 제2상 임상연구
간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세포암 환자 중 치료적 종괴제거술을 받은 환자에서 (주)이노셀 이문셀_엘씨 처치군과 무처치군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2. TACE를 실시한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BAY 43-9006의 제3상 임상시험 3. 수술 또는 RFA를 실시한 간세포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BAY 43-9006의 제3상 임상시험 4. Intermediate 단계의 간세포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drug-eluting beads와 doxorubicin을 사용한 TACE와 sorafenib 병합요법의 제2상 임상시험 5. 간세포암에서 TACE와 sorafenib 병합요법의 제2상 임상시험 6. 수술이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sorafenib의 제4상 임상시험 7. Lamivudine 내성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clevudine + adefovir와 lamivudine + adefovir 병합 치료 효과 비교를 위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폐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Randomized, PhaseIII Trial Comparing Etoposide/Cisplatin(EP) with Irinotecan/Cisplatin(IP) in Patients with Previously Untreated, Extensive Disease(ED) Small Cell Lung Cancer(SCLC) 2. A randomized, multicenter, open phaseII study of cetuximab with docetaxel, cisplatin as induction chemotherapy in unresectable, locally advanced head and neck squamous cell carcinoma(HNSCC) 3. A PhaseII study of paclitaxel and cisplatin in previously untreated, unrespectable invasive thymoma or thymic carcinoma 4. A randomized, multicenter, phaseII study of docetaxel and TS-1 combination as a first-line treatment in metastatic or recurrent head and neck squamous cell carcinoma(HNSCC) 5. A study to assess the efficacy of erlotinib for leptomeningeal carcinomatosis in EGFR mutation positive non-small cell lung cancer

구분	임상연구계획
대장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술 불가능한 간전이 대장암 환자에서 FOLFOX(폴폭스)와 cetuximab(세특시맵) 병행 요법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제2상 임상시험 2. 진행성 결장, 직장암 환자에서 SOX(S-1/옥살리플라틴(oxaliplatin)) 항암화학요법과 COX(카페시타빈(capecitabine, 젤로다)/ 옥살리플라틴(oxaliplatin)) 항암화학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제3상 비교 임상시험 3. 이전에 5-FU/Irinotecan으로 치료받은 진행성 대장암 환자에서 2차 치료로 XELOX와 Gemcitabine 제2상 임상시험 4. 절제가능한 직장암 환자에서 S1과 oxaliplatin을 이용한 수술전 화학방사선치료에 관한 I/II상 임상시험 5. 국소 진행성 직장암 환자에서 수술 전 선행 동시 항암화학-방사선요법 후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 후의 5-FU/LV(FL)과 Oxaliplatin/5-FU/LV(FOLFOX) 보조항암화학요법의 무작위 배정 제2상 임상시험 6. 아바스틴과 항암화학 병용요법으로 일차 치료로 받은 재발성 대장암에서 이차 치료로서 아바스틴과 항암화학 병용요법의 효과와 안전성 연구 7. 고령의 전이성 결장 직장암 환자에 대한 일차 요법으로서 카페시타빈과 병용시 베바시주맵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무작위 배정 공개 제3상 임상시험 8. A phase I/II study of docetaxel and oxaliplatin with radiotherapy in patients with anal cancer 9. 이리노테칸 단독 또는 병용 요법으로 치료받은 고형암 환자에서 Uridine Diphosphate Glucuronosyltransferase(UGT) 1A1의 다형성과 이리노테칸 독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10. A phase II study of preoperative chemoradiation with UFT-E plus leucovorin and the translational research for detection of predictive markers in the patients with locally advanced resectable rectal cancer
여성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궁경부암 FIGO병기 IA2-IIA에서 광범위 자궁 절제술 후 림프절 전이가 있는 환자에 대한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2상 임상시험 2. Levonorgestrel-releasing intrauterine system을 이용한 자궁내막증식증 환자의 치료 : 전향적 다기관 연구

붙임
3

‘암 진단·치료 중개융합연구 (지역암센터)’ 제안요청서

과제명	-
지원규모 및 기간	연간 3억원 이내, 5년 이내 (2년+3년) (단계별 기간 및 연구비는 연구과제 진척에 따라 조정함)
최종목표	암 연구분야 기반기술 및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암센터의 연구 개발 활동을 지원하여 암의 예방, 검진, 진단, 치료, 예후를 향상시키는 암 극복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 거점을 확보하고 차세대 연구인력을 양성함
주요 연구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사업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용적인 암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 · 지역적 특성을 가진 암종에 대한 조사 및 역학연구 · 지역의 암 연구지원 공유 프로그램 (종양은행 네트워크 등) · 지역의 암 진료 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 - 연구활동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보조적 기능을 수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한 교육훈련, 학술활동, 국제협력 및 산학협력 등 · 해당 연구분야의 연구정보·시설·기기활용 등의 편의제공 등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 연구과제는 총괄과제 1과제당 세부과제 4과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암센터 소장의 추천서 첨부 - 과제 구성 시 기초의과학자(Ph.D)와 임상의과학자(MD)의 연계 (세부과제 책임자로 참여)가 필수 조건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준수 - 연구결과는 단계별로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여,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음

**붙임
4**

‘암 예방·관리 연구’ 제안요청서

과제명	-
지원규모 및 기간	연간 0.6억원 이내(단독), 연간 2억원 이내(협동), 3년 이내
최종목표	국가 암 예방·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또한 증상 완화 및 관리를 위한 중재법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암 관련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정책 수립 방향 제시
주요 연구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 위험요인 관리·중재 연구 - 암 조기검진 연구 - 암 관련 의료의 질 및 비용 연구 - 암 환자 삶의 질 향상 연구 - 암 환자 증상관리 연구 - 암 관리·정책 근거 개발 연구 - 기타 암 예방·관리 연구
지원대상	주관연구기관은 산·학·연 모두 가능하며, 협동과제의 경우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준수 - 연구결과는 연차별로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여,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음

붙임
5

[기획과제]

'암정복을 위한 암연구 기획과제 도출' 제안요청서

과제명	-
지원규모 및 기간	2천만원 이내, 3개월 이내
기획필요성	<p>현재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고령 사회 진입과 질병구조 변화로 인하여 암 사망과 발생률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p> <p>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 재정 수지 악화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위해 효과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함</p>
목적 및 목표	<p>본 사업을 통하여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 연구 기획과제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암 연구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분석을 통한 향후 전망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유망분야의 지원 확대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기반 마련
주요 기획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암 연구동향 분석을 통하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주요 연구분야를 도출 - 암종별 유병률 및 발생 전망 등을 고려한 전략적 치료제, 진단 기술 개발 연구과제 도출 - 암 예방, 조기진단, 맞춤치료 등을 위한 효율적인 연구투자 방안 제시 등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p>기 수행된 암 연구 현황 및 수요예측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 분야별, 기술수준별 지원방향 제시</p> <p>산·학·연 전문가 인터뷰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도출된 아이টে를 바탕으로 구체적 수행과제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적 관점 및 기술적 측면에서 제안된 내용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설정 - 기존 추진되고 있는 관련 R&D 진행수준, 단계 규모 등 고려 -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최종결과물 도출 가능성 고려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피지놈 마커를 이용한 암 진단제 개발연구의 타당성 조사 및 산업화 전략 (2008년도 수행과제) ○ 2011년 하반기에 500백만원 규모로 본 과제 추진 예정

4 연구기간 및 사업추진일정

○ 연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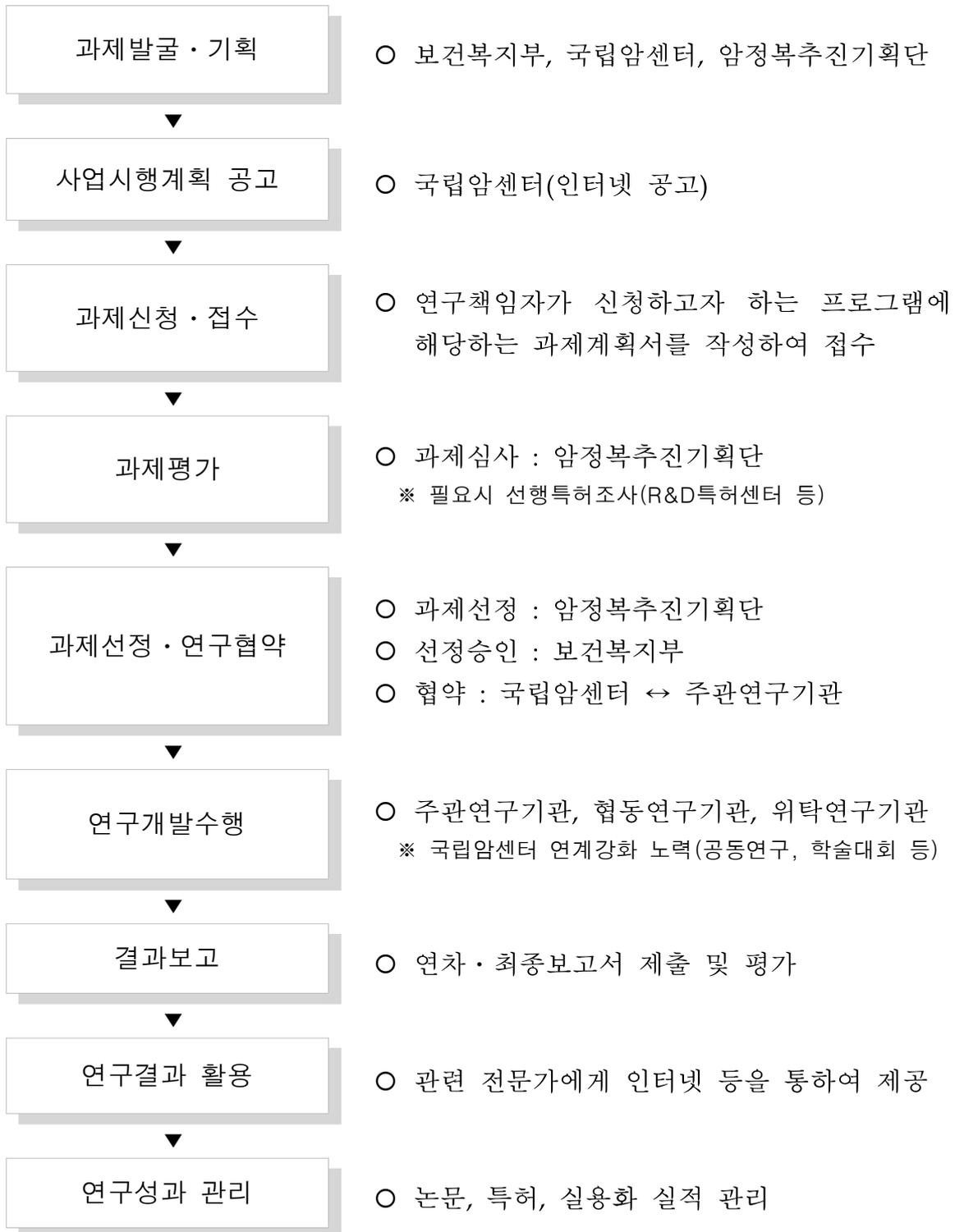
구 분		연구기간	비 고
신규과제		2011.5. 1 ~ 2012.4.30	
계속과제	2년차	2011.6. 1 ~ 2012.5.31	
	3년차	2011.5. 1 ~ 2012.4.30	
	2단계1년차	2011.6. 1 ~ 2012.5.31	단계평가 대상과제
	2단계2년차	2011.5.25 ~ 2012.5.24	
	2단계3년차	2011.4. 1 ~ 2012.3.31	
	3단계1년차	2011.5. 1 ~ 2012.4.30	단계평가 대상과제

○ 사업추진일정

구 분	신규과제	계속과제		
		2단계3년차	3년차 및 3단계1년차	2년차 및 2단계1,2년차
사업공고	1.12	-	-	-
과제접수	2.9~2.15	2.9~2.15	2.9~2.15	3.21~3.25
사업설명회	1.21	-	-	-
서면평가	3.14~3.25	2.21~3.4	3.14~3.25	4.18~4.29
선행특허조사(필요시)	4.4~4.15	-	4.4~4.15	4.4~4.15
구두발표평가*	4.18~4.22	3.9~3.10	4.18~4.22	5.11~5.13
최종선정결과 통보	4월	3월	4월	5월
협약 및 연구개시	5월	4월	5월	5, 6월

* 암정복추진기획단과 사전협의없이 과제책임자가 구두발표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과제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5 사업추진 · 관리체계



Ⅲ

신청요건 및 방법

1 신청요건

1)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포함)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과제 등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

2) 연구책임자의 자격 및 과제구성 요건

○ 연구책임자 자격

-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선임급^{주)} 이상의 정규 연구인력 이어야 함
- 비정규 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서의 임용 계약기간은 반드시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하며, 해당 연구기관의 임면권자가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주) 연구기관별 책임급, 선임급의 기준은 [별첨 1]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해당 기준표 참조

○ 세부과제 구성요건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제1세부 연구책임자를 겸해야 함
- 세부과제 하위에 다른 세부과제를 구성할 수 없음(위탁과제는 구성가능)
- 기업체의 참여 : 권장

구 분		세부과제 구성
암 진단·치료 중개융합연구	협동	2개 이상
	다기관 임상	가능(3개 기관 이상 참여)
	지역암센터	4개 이내
암 예방·관리연구	단독	해당없음
	협동	2개 이상
미래도전연구	단독	해당없음
	중견	해당없음
지정과제		가능

3) 신청 및 참여제한

○ 신청제한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에 의해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2011. 5)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최종 연구종료 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또는 타 부처 지원으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신청과제와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모든 신청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중복성 여부를 확인함

○ 참여제한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은 최대 2과제(주관1, 세부1 또는 세부2)까지 동시 수행 가능함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는 1과제만 수행 가능)
- 신청일 현재 신청제한의 조건에 해당하는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없음. 단, 과제가 올해 종료되는 과제(2011년)나 지정과제 연구책임자는 참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연구개발계획서는 접수 후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 여부에 대한 신청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는 탈락됨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준수

-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제정되었으며, 인간의 배아 및 유전자 등을 대상으로 생명현상을 규명·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함
-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임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아 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 동의권자의 동의하에 연구를 할 수 있음. 단, 연구의 목적이 적법하여야 하며(법 제17조) 일정 시설·인력기준을 갖추고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법 제18조) 하고, 해당 연구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승인(법 제19조) 받은 후 「배아연구기관등록증」 과 「배아연구계획승인서」 사본을 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유전자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직접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유전자검사기관”)는 법에 따라 연구기관 및 관련 협력기관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 「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 연구기관신고필증」을 발부받은 후 계획서 제출 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연구내용 중 유전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검사대상물·유전자 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를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에서 정의한 유전자은행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법 제2조, 제32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유전자은행의 허가를 받은 「유전자은행허가증」 사본을 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 배아연구, 유전자검사·연구, 유전자은행의 경우 등록 및 승인 전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없음
- 그 외 배아의 생성(배아생성의료기관), 잔여배아의 연구(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연구(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유전자 검사·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유전자검사기관 및 유전자은행), 유전자치료(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및 연구의 종류·대상·범위를 준수하여야 함

5) 임상시험시 준수사항

-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를 계획하는 경우, 해당 연구수행 전에 인체실험의 윤리성을 검토하는 연구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인간배아세포를 이용한 연구 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도 준수하여야 함
- 임상시험 시행예정인 과제들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계획승인서를 받아야 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임상시험계획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및 숙지사항

- 신청을 원하는 연구자는 본 사업계획서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를 숙지한 후 적정 프로그램을 선택함
- 신청연구자는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사업관리정보시스템(<http://rnd.ncc.re.kr>)의 '서식' 또는 『2011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는 접수 일정에 맞추어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사업관리정보시스템(<http://rnd.ncc.re.kr>)에 전산등록하여 접수함
 - ※ 과제평가 및 관리는 전산입력 자료를 기초로 하므로, 제출하는 계획서에 근거한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함
- 연구비 산정
지원프로그램의 지원규모와 [별첨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적정연구비를 산정함.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본 지침에 위배되는 비용은 불인정함
- 위탁정산실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연구과제 수행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리기관(국립암센터)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탁정산 회계수수료는 연구개발비 중 연구활동비에 계상·집행하며, 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른 단계별 수수료를 적용함. 이 때, 회계수수료는 협약기간 종료 전 위탁정산기관으로 입금하여야 함

2) 제출서류 및 기한

-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공문(일괄 제출)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전산파일
 - ※ 연구사업관리정보시스템(<http://rnd.ncc.re.kr>)에 전산등록하여 제출

○ 제출기한

구 분	신규과제	계속과제		
		2단계3년차	3년차 및 3단계1년차	2년차 및 2단계1,2년차
접수기간	2.9~2.15	2.9~2.15	2.9~2.15	3.21~3.25

○ 문의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사무국

TEL : 031-920-2141~6, FAX : 031-920-2139

IV

평가 및 관리

1 평가방법

1) 신청요건심사

- RFP와의 부합성, 중복신청 여부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 여부
- 과제의 구성요건 등

※ 사업계획서 및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과제는 신청요건심사에서 제외함

2) 프로그램별 평가 및 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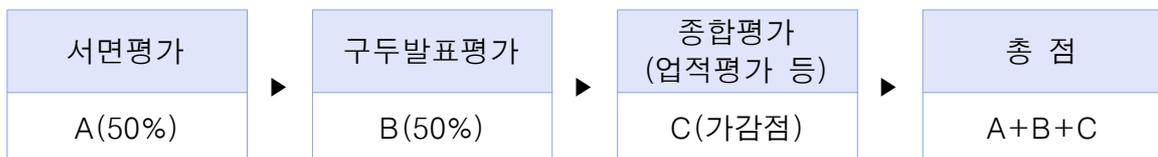
- 대상 : 미래도전연구(단독), 암 예방·관리연구(단독)
- 평가순서 및 반영비율



※ 구두발표평가 대신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연구분야별 패널평가단을 구성하여 토론평가 실시

- 대상 : 암 진단·치료 중개융합연구(협동, 다기관 임상), 미래도전연구(중견), 암 예방·관리연구(협동), 지정과제, 기획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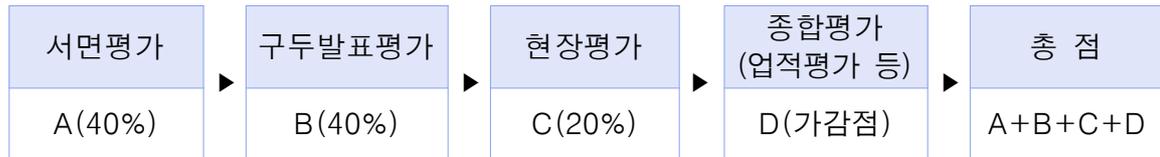
- 평가순서 및 반영비율



IV. 평가 및 관리

○ 대상 : 암 진단·치료 중개융합연구(지역암센터)

○ 평가순서 및 반영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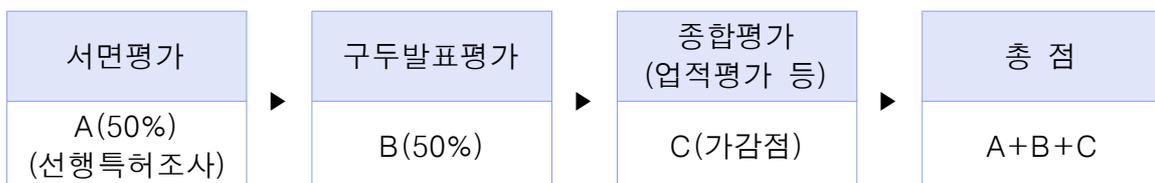
※ 현장평가는 구두발표평가와 병행하여 실시되며, 현장방문 대신 주관연구기관의 육성인지 및 지원사항, 센터의 연구환경 등에 대한 발표평가로 진행됨(과제선정 후 실사를 통해 발표내용을 점검할 수 있음)

※ 단계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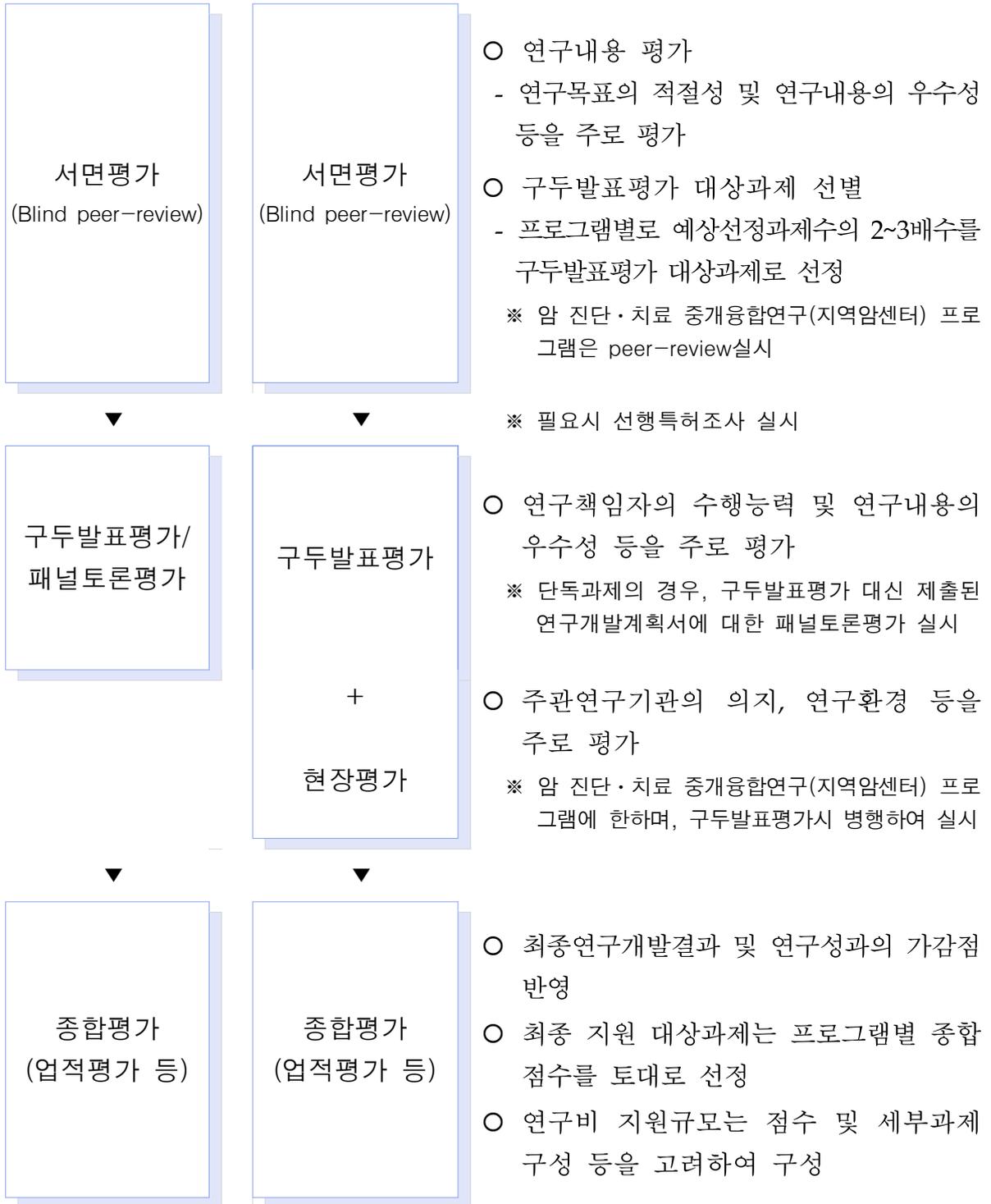
○ 대상 : 연구기간이 단계로 구성된 프로그램 중 다음단계 진입 예정 과제

- 해당 프로그램 수행과제의 다음단계 진입 시, 해당단계 연구성과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하여 다음단계로의 계속 수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내실 있고 효율적인 연구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 평가항목 중 '이 과제의 다음단계 진입에 동의하는가' 항목에 대하여 서면평가 및 구두발표평가에서 각각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고,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다음단계 진입이 가능함

○ 평가순서 및 반영비율



3) 평가절차



4) 주요평가기준

○ 선정평가

프로그램		평가기준	
		서면/구두발표평가	현장평가
암 진단·치료 중개융합연구	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필요성 - 예비(선행)연구결과의 우수성 및 적절성 - 연구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 연구책임자 능력의 우수성 - 임상적용 실용화 가능성 -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해당없음
	다기관 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필요성 - 임상적용 가능성 - 연구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 참여연구자의 우수성과 구성의 적절성 -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해당없음
	지역암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필요성 - 연구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 연구기관의 적절성 - 지역암센터 역할 증대 기여 가능성 - 연구팀 구성의 우수성과 적절성 -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 인력, 장비 등 연구 기반 구축정도 - 연구기관의 자체 지원 계획 및 육성의지 - 해당분야의 과거 연구개발 실적 등
암 예방·관리 연구	단독 · 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필요성 - 예비연구결과의 적절성 - 연구책임자의 연구업적 - 연구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 연구내용의 우수성 - 연구방법의 적정성 - 연구성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가능성 	해당없음

IV. 평가 및 관리

프로그램		평가기준	
		서면/구두발표평가	현장평가
미래도전연구	단독 · 중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필요성 - 예비연구결과의 적절성 - 연구목표의 적절성 - 연구내용의 창의성 및 우수성 - 연구방법의 적정성 - 예상연구성과의 우수성 및 달성 가능성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우수성 - 연구기간 및 연구비 편성의 적절성 - 연구책임자의 연구업적 	해당없음
지정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FP와의 적합성 - 연구의 시급성 - 연구의 필요성 - 연구목표의 성공가능성 - 연구내용의 우수성 - 연구방법의 적정성 -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 연구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 연구성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가능성 - 연구책임자의 적격성 	해당없음

○ 연차평가

프로그램	서면/구두발표평가 평가기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의 계속지원 필요성 - 수행된 연구결과와 최종목표의 연관성 - 당초 연구계획과의 부합성 - 연구결과의 적절성 및 기대효과의 타당성 - 편성된 연구비의 적정성

○ 단계평가

프로그램	서면/구두발표평가 평가기준
다기관공동 암임상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목표달성도 및 우수성 - 연구단계의 진전여부 - 근거확립 및 표준지침 마련여부 - 차기단계 연구계획의 적절성 - 연구결과의 예상되는 파급효과 - 차 단계 진입 허용 여부 (가/부)
이행성암연구 특별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목표달성도 및 우수성 - 연구단계의 진전여부 - 임상적용 등 실용화 가능성 - 차기단계 연구계획의 적절성 - 연구결과의 예상되는 파급효과 - 차 단계 진입 허용 여부 (가/부)
암전문연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목표달성도 및 우수성 - 연구단계의 진전 여부 - 임상적용 등 실용화 가능성 - 차기단계 연구계획의 적절성 - 연구결과의 예상되는 파급효과 - 차 단계 진입 허용 여부 (가/부)
지역암센터 연구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목표달성도 및 우수성 - 연구단계의 진전 여부 - 지역암센터 역할 증대 기여도 - 차기단계 연구계획의 적절성 - 연구결과의 예상되는 파급효과 - 차 단계 진입 허용 여부 (가/부)

5) 가감점 기준

○ 최종평가 결과 및 연구성과 반영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기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기 수행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및 연구성과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거, 최종선정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최종평가 결과 및 연구성과 실적 반영 기준>

구 분	가감점					비고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최종평가 결과	+2점	+1점	0점	-1점	-2점	
	점수≥90	80≤점수<90	70≤점수<80	60≤점수<70	점수<60	
연구성과	+2점	+1점	0점	-1점	-2점	
계	+4점	+2점	0점	-2점	-4점	

2 연구사업의 운영 및 관리

1) 연구책임자 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연구책임자의 사망, 이민, 퇴직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요청이 가능하며,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지역암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세부연구과제의 연구실적 부진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센터대표자가 관리기관에 세부연구책임자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과제 수행 중 해당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국외 출장계획이 있는 연구책임자(주관/세부)는 출국 1개월 전까지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연차실적·계획의 평가

- 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 연구종료 전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연차 실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암정복추진기획단은 이를 평가하여 차년도 연구지원 여부 및 지원연구비를 확정함
- 평가점수 반영

점 수	점수≥70점	60점≤점수<70점	점수<60점
지원여부	계속지원	조기중단	중단(연구책임자 제재)

※ ‘중단’으로 분류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동 사업 참여를 3년간 제한함

- 연구개발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 중 단독과제의 연차평가는 서면 평가만 실시함. 단, 서면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구두발표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3) 단계실적·계획의 평가

- 연구기간이 단계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경우, 각 단계별 연구종료 전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단계실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암정복추진 기획단은 단계평가를 통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 평가항목 중 ‘이 과제의 다음단계 진입에 동의하는가’ 항목에 대하여 서면평가 및 구두발표평가에서 각각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고,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다음단계 진입이 가능함

4) 최종보고서 평가

- 주관연구책임자는 총 연구기간의 종료일까지 전체 연구기간 동안의 연구 결과 등을 작성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암정복추진기획단 전문위원회를 통한 최종 평가를 실시함
- 최종평가는 서면평가로 실시하며, 평가점수에 따라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으로 구분하고, ‘불량’과제 연구책임자는 동 사업 참여를 3년간 제한함

5) 연구성과의 관리

- 예상 연구성과에 대한 계량적 명시
- 연구계획서의 제출 시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시점, 총 연구기간 종료시점 및 최종 연구 종료 3년 후에 예상되는 구체적인 연구성과를 계량적으로 명시함
 - 정부정책기여, 진료지침개발, 치료기술개발, 제품개발, 기술이전, 특허, 논문 등

-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예상 연구성과는 연구과제 선정평가 및 최종 평가 등에서 주요 평가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연구성과 보고
-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성과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정부정책기여, 진료지침개발, 치료기술개발, 제품개발, 기술이전, 특허, 논문 등의 실적과 증빙자료 및 이의 활용성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최종연구기간 종료 후 3년까지 연구성과가 발생하면 그 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연구성과 관리를 위하여 연구종료 후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연구종료 후 연구성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6) 연구결과의 발표 및 게재

-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성과의 홍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홍보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사실을 명기하여야 하며, 관리기관과 필히 사전 협의하여야 함

- 특히 연구결과를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특허 출원(등록)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과제고유번호 예시 : 1120000)’
 - 영문표기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National R&D Program for Cancer Contro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과제고유번호 예시 : 1120000)’

<기술료 납부제도 안내>

- 기술료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납부비율은 영리법인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30%(비영리법인인 경우 면제)임
 - ※ 기술료 납부액은 각 세부연구기관별로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본 계획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기타 연구사업의 운영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함

별첨 1.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해당 기준표

연구기관	책임급	선임급	연구원급	연구원보급
대 학	1.부교수 이상 2.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1.전임강사 이상 2.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1.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2.학사학위 소지자 로서 대학부설연 구기관 6년이상 근무자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이하
국/공립 의료기관 및 부설연구소 소유 민간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 로서 면허취득 후 12년 이상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 로서 면허취득 후 7년 이상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 로서 면허취득 후 2년 이상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 및 비의료인 연구자
국/공립 연구소	1.연구직 과장 또는 연구관 5년 이상 2.기술직 4급 이상 3.정부출연연구소의 책임급 연구원	1.연구관 2.기술직 5급 3.정부출연연구소의 선임급 연구원 4.박사학위 소지자 로서 국/공립 연 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사	1.연구사 2.기술직 6급 이하 3.정부출연연구소의 석사급 연구원	정부출연연구소의 학사급 연구원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기업체	1.학사학위 소지자 로서 전공분야 연 구경력 12년 이상 2.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5년 이상	1.학사학위 소지자 로서 전공분야 연 구경력 6년 이상 2.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1년 이상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 연구경력 1년 이상	학사학위이하 소지자

별첨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 목	세 목	내 용
인건비	내부인건비	<p>① 사용용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p> <p>② 계상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함)에 따라 계상함 ○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않음 <p>〈내부인건비 지급 가능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기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해당과제 관련 인건비 미확보 확인서류를 해당 연구기관장이 발급 가능한 연구인력 <p>③ 계상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월평균액) × 참여율 × 실제 참여기간(월) ○ 기업의 경우, 현물로만 계상가능

별첨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 목	세 목	내 용						
인건비	외부인건비	<p>① 사용용도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p> <p>② 계상기준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관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p> <p>③ 계상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 규정에 따른 월평균실지급액(월평균기준액)×참여율×실제참여기간(월) ○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외부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학생의 참여비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학사과정</th> <th style="text-align: center;">석사과정</th> <th style="text-align: center;">박사과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0원/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1,800,000원/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000원/월</td> </tr> </tbody> </table> <p><연구비 관리 우수 인증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연구비 관리 우수 인증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및 관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알기쉬운 과학기술분야 연구비 관리 매뉴얼”의 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및 관리 참고 ○ 학생연구원 인건비 산출식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연구원 수준별 man-month 총액으로 계상 * man-month 총액 : 한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1,000,000원/월	1,800,000원/월	2,500,000원/월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1,000,000원/월	1,800,000원/월	2,500,000원/월						

별첨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 목	세 목	내 용
인건비	외부인건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10px;">참고(인건비 공통)</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율의 개념 :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함 ○ 참여율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서의 참여현황을 명시하여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 ○ 참여율의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함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미지급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인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외부인건비 •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인원의 인건비 • 연구개발계획서에 총원으로 명시된 인원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총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비시 • 외부인건비 지급시 참여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관리기관 승인 없이 계획서 당초예산 대비 20%이상 증액분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 변경통보는 해당연도 연구종료 10일 이전에 별도의 공문으로 접수함(해당연도 연구기간 동안의 변경사항을 취합하여 일괄 제출)

별첨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 목	세 목	내 용
직접비	연구장비 · 재료비	<p>① 사용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장비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p>② 계상기준 실소요 경비를 계상함</p> <p>※ 불인정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및 기자재 구입비(해당 연구기간 종료 직전에 구입의뢰하여 연구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단, 계속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함(연차실적·계획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하여야 함)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개인용 컴퓨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연구활동비	<p>① 사용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 전문가 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세부과제가 있는 주관과제에만 계상) <p>② 계상기준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함</p>

별첨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 목	세 목	내 용																																																																																											
직접비	연구활동비	참고1																																																																																											
		여비에 대한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시내출장비 (단위:원)</td> <td style="width: 50%;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시외출장비 여비 정액표 (단위: 원)</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5%;">출장비</th> <th style="width: 15%;">비고</th> <th style="width: 10%;">직급</th> <th style="width: 10%;">철도 운임</th> <th style="width: 10%;">현지교통비 (1일당)</th> <th style="width: 10%;">숙박비 (1야당)</th> <th style="width: 10%;">식비 (1일당)</th> </tr> <tr> <td>전 연구원</td> <td>20,000</td> <td>모든경비 포함</td> <td>책임급</td> <td>KTX</td> <td>10,000</td> <td>46,000</td> <td>30,000</td> </tr> <tr> <td></td> <td></td> <td></td> <td>선임급</td> <td>KTX</td> <td>10,000</td> <td>46,000</td> <td>25,000</td> </tr> <tr> <td></td> <td></td> <td></td> <td>원급이하</td> <td>KTX</td> <td>10,000</td> <td>46,000</td> <td>20,000</td> </tr> </table> </td> <td></td> </tr> <tr> <td colspan="2"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국외여비 정액표 (단위:\$)</td> </tr> <tr> <td></td> <td></td> <td>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5%;">직급</th> <th style="width: 15%;">항공료</th> <th style="width: 10%;">일비</th> <th style="width: 10%;">숙박비</th> <th style="width: 10%;">식비</th> </tr> <tr> <td>책임급</td> <td>일반석</td> <td>40</td> <td>147</td> <td>123</td> </tr> <tr> <td>선임급</td> <td>일반석</td> <td>32</td> <td>130</td> <td>100</td> </tr> <tr> <td>원급이하</td> <td>일반석</td> <td>28</td> <td>114</td> <td>73</td> </tr> </table> </td> </tr> <tr> <td colspan="2"></td> <td style="padding: 5px;">-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td> </tr> <tr> <td></td>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참고2</td> </tr> <tr> <td></td> <td></td> <td style="padding: 5px;">위탁정산을 위해 주관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세부과제에만 위탁정산 회계 수수료를 계상하여야 함(위탁정산 대상액은 협약 금액 중 현물을 제외한 연구개발비)</td> </tr> <tr> <td></td> <td></td> <td style="padding: 5px;">* 위탁정산 회계수수료</td> </tr> <tr> <td></td> <td></td> <td style="padding: 5px;">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60%;">구 분</th> <th style="width: 40%;">수수료</th> </tr> <tr> <td>5천만원 미만</td> <td>260,000원</td> </tr> <tr> <td>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td> <td>280,000원</td> </tr> <tr> <td>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td> <td>300,000원</td> </tr> <tr> <td>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td> <td>300,000원</td> </tr> <tr> <td>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td> <td>300,000원</td> </tr> </table> </td> </tr> <tr> <td></td> <td></td> <td style="padding: 5px;"> ※ 불인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참여인력의 국내·외 여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여비 • 해당과제와 무관하거나 기관 운영비성(공공요금 등) 경비 • 종신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 참가비 •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 학위과정 수료를 위한 학비 등 •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계좌이체 등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td> </tr> </table>	* 시내출장비 (단위:원)	* 시외출장비 여비 정액표 (단위: 원)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5%;">출장비</th> <th style="width: 15%;">비고</th> <th style="width: 10%;">직급</th> <th style="width: 10%;">철도 운임</th> <th style="width: 10%;">현지교통비 (1일당)</th> <th style="width: 10%;">숙박비 (1야당)</th> <th style="width: 10%;">식비 (1일당)</th> </tr> <tr> <td>전 연구원</td> <td>20,000</td> <td>모든경비 포함</td> <td>책임급</td> <td>KTX</td> <td>10,000</td> <td>46,000</td> <td>30,000</td> </tr> <tr> <td></td> <td></td> <td></td> <td>선임급</td> <td>KTX</td> <td>10,000</td> <td>46,000</td> <td>25,000</td> </tr> <tr> <td></td> <td></td> <td></td> <td>원급이하</td> <td>KTX</td> <td>10,000</td> <td>46,000</td> <td>20,000</td> </tr> </table>	구분	출장비	비고	직급	철도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전 연구원	20,000	모든경비 포함	책임급	KTX	10,000	46,000	30,000				선임급	KTX	10,000	46,000	25,000				원급이하	KTX	10,000	46,000	20,000		* 국외여비 정액표 (단위:\$)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5%;">직급</th> <th style="width: 15%;">항공료</th> <th style="width: 10%;">일비</th> <th style="width: 10%;">숙박비</th> <th style="width: 10%;">식비</th> </tr> <tr> <td>책임급</td> <td>일반석</td> <td>40</td> <td>147</td> <td>123</td> </tr> <tr> <td>선임급</td> <td>일반석</td> <td>32</td> <td>130</td> <td>100</td> </tr> <tr> <td>원급이하</td> <td>일반석</td> <td>28</td> <td>114</td> <td>73</td> </tr> </table>	직급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일반석	40	147	123	선임급	일반석	32	130	100	원급이하	일반석	28	114	73			-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참고2			위탁정산을 위해 주관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세부과제에만 위탁정산 회계 수수료를 계상하여야 함(위탁정산 대상액은 협약 금액 중 현물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 위탁정산 회계수수료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60%;">구 분</th> <th style="width: 40%;">수수료</th> </tr> <tr> <td>5천만원 미만</td> <td>260,000원</td> </tr> <tr> <td>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td> <td>280,000원</td> </tr> <tr> <td>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td> <td>300,000원</td> </tr> <tr> <td>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td> <td>300,000원</td> </tr> <tr> <td>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td> <td>300,000원</td> </tr> </table>	구 분	수수료	5천만원 미만	26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80,000원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300,000원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300,000원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300,000원			※ 불인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참여인력의 국내·외 여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여비 • 해당과제와 무관하거나 기관 운영비성(공공요금 등) 경비 • 종신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 참가비 •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 학위과정 수료를 위한 학비 등 •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계좌이체 등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시내출장비 (단위:원)	* 시외출장비 여비 정액표 (단위: 원)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5%;">출장비</th> <th style="width: 15%;">비고</th> <th style="width: 10%;">직급</th> <th style="width: 10%;">철도 운임</th> <th style="width: 10%;">현지교통비 (1일당)</th> <th style="width: 10%;">숙박비 (1야당)</th> <th style="width: 10%;">식비 (1일당)</th> </tr> <tr> <td>전 연구원</td> <td>20,000</td> <td>모든경비 포함</td> <td>책임급</td> <td>KTX</td> <td>10,000</td> <td>46,000</td> <td>30,000</td> </tr> <tr> <td></td> <td></td> <td></td> <td>선임급</td> <td>KTX</td> <td>10,000</td> <td>46,000</td> <td>25,000</td> </tr> <tr> <td></td> <td></td> <td></td> <td>원급이하</td> <td>KTX</td> <td>10,000</td> <td>46,000</td> <td>20,000</td> </tr> </table>	구분	출장비	비고	직급	철도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전 연구원	20,000	모든경비 포함	책임급	KTX	10,000	46,000	30,000				선임급	KTX	10,000	46,000	25,000				원급이하	KTX	10,000	46,000	20,000																																																													
구분	출장비	비고	직급	철도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전 연구원	20,000	모든경비 포함	책임급	KTX	10,000	46,000	30,000																																																																																						
			선임급	KTX	10,000	46,000	25,000																																																																																						
			원급이하	KTX	10,000	46,000	20,000																																																																																						
* 국외여비 정액표 (단위:\$)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5%;">직급</th> <th style="width: 15%;">항공료</th> <th style="width: 10%;">일비</th> <th style="width: 10%;">숙박비</th> <th style="width: 10%;">식비</th> </tr> <tr> <td>책임급</td> <td>일반석</td> <td>40</td> <td>147</td> <td>123</td> </tr> <tr> <td>선임급</td> <td>일반석</td> <td>32</td> <td>130</td> <td>100</td> </tr> <tr> <td>원급이하</td> <td>일반석</td> <td>28</td> <td>114</td> <td>73</td> </tr> </table>	직급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일반석	40	147	123	선임급	일반석	32	130	100	원급이하	일반석	28	114	73																																																																							
직급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일반석	40	147	123																																																																																									
선임급	일반석	32	130	100																																																																																									
원급이하	일반석	28	114	73																																																																																									
		-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참고2																																																																																											
		위탁정산을 위해 주관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세부과제에만 위탁정산 회계 수수료를 계상하여야 함(위탁정산 대상액은 협약 금액 중 현물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 위탁정산 회계수수료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60%;">구 분</th> <th style="width: 40%;">수수료</th> </tr> <tr> <td>5천만원 미만</td> <td>260,000원</td> </tr> <tr> <td>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td> <td>280,000원</td> </tr> <tr> <td>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td> <td>300,000원</td> </tr> <tr> <td>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td> <td>300,000원</td> </tr> <tr> <td>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td> <td>300,000원</td> </tr> </table>	구 분	수수료	5천만원 미만	26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80,000원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300,000원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300,000원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300,000원																																																																															
구 분	수수료																																																																																												
5천만원 미만	26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80,000원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300,000원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300,000원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300,000원																																																																																												
		※ 불인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참여인력의 국내·외 여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여비 • 해당과제와 무관하거나 기관 운영비성(공공요금 등) 경비 • 종신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 참가비 •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 학위과정 수료를 위한 학비 등 •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계좌이체 등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별첨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 목	세 목	내 용
직접비	연구수당	<p>① 사용용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p> <p>② 계상기준 해당과제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함</p> <p>※ 불인정액 · 계획서 당초 예산 대비 초과 집행분</p>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연구 개발비	<p>① 사용용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 되는 경비</p> <p>② 계상기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과제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p> <p>※ 불인정액 · 관리기관 승인 없이 계획서 당초 예산 대비 20%이상 증액분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p>
간접비	간접비	<p>① 사용용도</p> <p>① 인력지원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 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 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p>② 연구지원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별첨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 목	세 목	내 용
간접비	간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인건비의 2% 범위에서 집행)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 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 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은 제외),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함) <p>③ 성과활용지원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 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 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별첨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 목	세 목	내 용
간접비	간접비	<p>㉔ 계상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 : 인건비(미지급금 제외)와 직접비(현물 제외)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 ○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 : 인건비(미지급금 제외)와 직접비(현물제외)를 합산한 금액의 17% 범위에서 계상 ○ 영리기관 : 인건비(미지급금 제외)와 직접비(현물제외)를 합산한 금액의 5% 범위에서 계상. 단,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 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가능 <p>※ 불인정액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p>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328호]